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전화(02)3707-9533~4 / 전송(02)3707-9549
대기보전과 과장 장흥숙 팀장 이운형 담당자 이순재

문서번호 대기67131-10156

시행일자 1999.10.01. (1년)

(경유)

받 음 법무담당관

참 조

보존기간	5년	대기보전과장
공개여부	공개	장흥숙
		생활공해담당사무: 이운형
기안자	이순재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조례개정안) 제출

1.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설치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설치근거법령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3.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덧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7조에 의거 동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오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부. 끝.

대 기 보 전 과 장

0123 123

40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심의
의결
사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환경관리실장 김우석
제출년월일	1999.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안 제2조).

(1)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환경관리실장

(2) 구성위원수 : 명문규정 없음 → 20인 이내

(3) 위원의 임기 : 3년 → 2년(법에 의한 임기와 동일)

나.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1) 회 의 운 영 : 위원중 분쟁사건별로 3인을 지명, 운영

(2) 개의 및 의결 : 지명된 위원 전원참석으로 개의,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조정신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

※ 환경분쟁조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환경분쟁사건 중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인 재정신청에 한하여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인 조정
신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제15조(규칙 제정) ① (생략)

②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99.8.31 ~ '99.9.20)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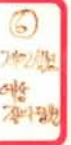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1999. 10. 5

환 경 관 리 실
(대 기 보 전 과)

0127 *127*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98.3.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1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위원회의 위원장도 행정(1)부시장에서 환경관리실장으로 조정하여 분쟁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구성토록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법 제31조에 의거 환경분쟁사건마다 각각 이를 수행할 위원들을 위원장이 지명하고 지명된 위원을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였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명시된 바 없어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분쟁사건의 조정신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신청토록 한 증거보전신청제도가 종전에는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운영되어 왔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인 裁定신청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환경분쟁조정법 제39조), 우리시 위원회의 소관사무인 調停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